

2018.02.22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 모바일 앱 접근성 관련 내용

# I. 정보 접근성 준수 필요성

## 1. 법적 근거

국가 정보화 기본법의 개정

###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 ✓ **제32조의2(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 I. 정보 접근성 준수 필요성

## 1. 법적 근거

### 국가 정보화 기본법의 개정

####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설명

- ✓ 2018년 1월 30일,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고 동년 2월 22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
- ✓ 제32조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18년 8월22일 시행하며 제32조의2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19년 2월 22일 시행
- ✓ 개정 이유
  - 첫 번째, 영유아의 스마트폰을 통한 과도한 인터넷 이용이 언어능력, 신체발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
  - 두 번째는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 ✓ 국가정보화기본법
  - <http://www.law.go.kr/법령/국가정보화기본법>

# I. 정보 접근성 준수 필요성

## 1. 법적 근거

국가 정보화 기본법의 개정

### ●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인증은 필수인가?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의 내용에서 웹 및 모바일 앱의 접근성 보장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국가품질 인증은 국가가 장애인, 고령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웹 접근성 또한 동일한 위치에 있으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 사실의 홍보, 마크 부착의 권리를 가집니다
- ✓ 웹 및 모바일 앱의 접근성 보장이 되어있다면 인증마크의 획득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접근성 준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획득 시의 홍보 효과와 접근성 관련 인권위의 진정이나 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차별의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최고의 방법이 품질마크 획득이기 때문에 많은 기관과 업체에서 인증을 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 ✓ 애플리케이션 국가품질인증을 명문화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32조 2항의 시행일은 2019년 2월22일로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개편 및 개발을 기획하고 있는 모든 기관 및 업체는 이에 유의하여 향후 사업 진행에 접근성을 반영해야 이후 불필요한 예산 지출 등의 예상되는 문제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 현재 애플리케이션 품질인증 기관은 선정되지 않은 상태로 민간인증의 형태로 발급이 됩니다. 하지만 웹 접근성과 마찬가지로 국가품질인증 시행 시 기존에 획득한 민간품질인증은 국가품질인증으로 소급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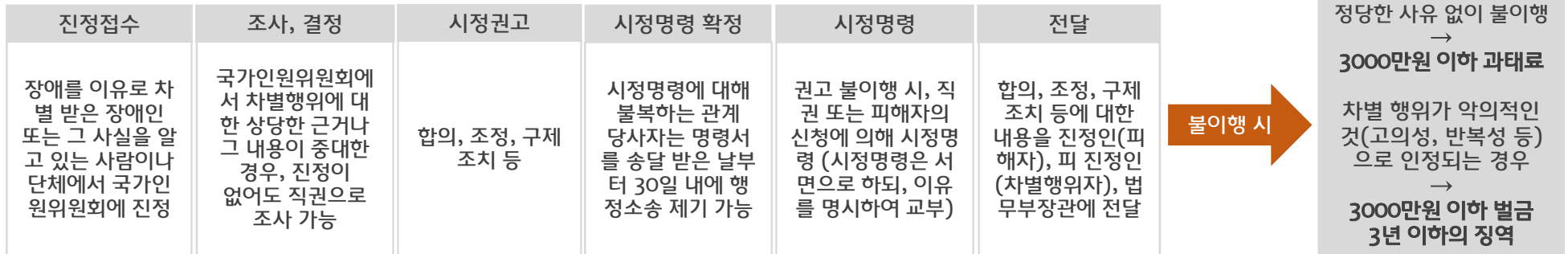
# 1. 정보 접근성 준수 필요성

## 2. 기타 필요성

인권위 진정 및 민원·소송 방지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웹 사이트와 동일하게 장애인 차별에 대한 진정 및 소송의 대상이 됨

- ✓ 고령자 및 장애인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인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인권위 진정 및 소송·민원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며 국가 정보화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단체 및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진정·소송 활동이 예상됨.
- ✓ 권리 구제 절차



- ✓ OS 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접근성 기술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만 제대로 접근성을 준수한다면 모든 사용자의 콘텐츠 접근 및 운용이 충분히 가능함.